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83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이양수·추경호·송석준

김성원 · 조수진 · 이철규

한기호 • 유상범 • 이광재

송기헌ㆍ허 영ㆍ권성동

(1291)

제안이유

강원도는 백두대간의 산림과 동해바다의 수자원 등의 보호로 인해 환경규제가 심하고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군사규제로 묶여있는 실정임. 강원도는 여러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더디고 각 종 사회시설들이 낙후되어있는 상황이어서 강원도민들의 불편을 초래 하고 있음. 또한 지속적인 인구소멸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강원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임.

따라서 강원도를 특별자치지역으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강원 도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한 생활문화 등 복리 향상을 신장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그 법적 지위관할구역 및 조직 운

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다가올 환동해시대에 강원도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다각도의 발전방안과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그 관할구역은 종전에 강원도가 관할하여 온 구역과 동일하게 함(안 제7조).
- 나.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 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9조).
- 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사업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안 제20조)
- 마. 도지사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1조).
- 바. 도지사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사

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받아 승인함(안 제38조 및 제42조).

- 사.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 아.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 자.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항만 및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 차.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및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부여함(안 제64조 및 제6 6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 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환동 해경제자유특구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환동해경제자유특구"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가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강원도(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환동해경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 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 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 히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강원특별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

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 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 용한다.
-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 령을 적용한다.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가 환동

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개발과 강원도발전에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2.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편의 증진 과 지원에 관한 사항
- 3.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개발과 조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4.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확장 및 추가 조성에 관한 사항
- 5.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에 관한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6. 환동해경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7. 강원특별자치도에 연접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8.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소멸에 대한 분석과 인구소멸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 9.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10.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또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 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각 동수로 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도지사
- 2. 도지사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부지사
- 3. 도지사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 시장·군수 2 명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도시계획·개발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 ⑥ 지원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을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국가는 강원도환동해경 제자유특구 및 이와 연계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원특별 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환동해경제자유특구와 배후지역 간의 연계 발전 지원) ① 도지사는 총 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환동해경제자유특구와 그

- 배후지역 간의 연계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계발전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연계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 세출예산액에 대한 연계발전사업의 사업비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3조(국가 등과 강원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지원)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 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인사교 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 자치법」 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조직 특례)「지방자치법」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 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 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연서(連署)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있다.
 - 1.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재정 특례)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 제18조(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 제19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 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

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0조(강원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로부터의 출연금
 - 2. 제4항에 따른 납부금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발전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 ④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21조(강원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의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2.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정 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 제2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⑤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3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5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

- 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 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7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

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 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구의 지정 등

- 제29조(환동해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동해경제 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2.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 3. 해당 지역 시·군의 의견 수렴 및 청취
 - 4. 해당 지역에 인접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동해경제자유특 구개발의견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주 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야 한다.

- 1.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명칭(대국민 인지도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별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위치 및 면적에 관한 의견
- 2.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 시기를 포함 한다)과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선정에 관한 의견
- 3.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조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의견
- 4.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이외 인접지역의 역할에 대한 의견
-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의견
- 6. 인구 유입 및 경제활동인구 증대 계획에 관한 의견
-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관한 의견
- 8. 교통망 확충에 관한 의견
- 9. 산업유치 계획에 관한 의견
- 10. 국제기업·국제기구·국제NGO단체·국제학술연구단체 등의 유치에 관한 의견
- 11.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의견
- 12.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의견
- 13. 내·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에 관한 의

견

- 14.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계획에 관한 의견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관보에 고시토록 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2. 화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 3.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4.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복수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구역 간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5.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과 입주하는 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6.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이외 인접지역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1조(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29조의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동해경제자유특구개발계획(이

- 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경우 산업 통산자원부 장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 ④ 도지사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지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32조(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 도지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부지 선정을 포함한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 2. 내·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 4.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 성
- 5. 인구 유입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한 효과
- 6.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관련 영향 요소
- 제33조(개발계획) 제29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강원특별자 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2.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
 -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4.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이하 "단위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위 치·면적
 - 5. 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 6. 재원 조달방법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9. 교통처리계획
- 10. 산업유치계획
-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12. 환경보전계획
- 13. 내·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계획
-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20일이상의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해당 지역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4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

- 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변경·폐지 및 구역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도·시·군 기 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8. 「연안관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 립 및 변경
-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 10.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1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 변경
- 13.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36조(행위의 제한) ①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서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제37조(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동 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환 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관리가 곤란한 경우
 - 3. 입주 및 투자기업 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환동해경제자유특 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

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5장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의 시행

- 제38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4.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내·외국인 투자의 유치능력
- 2.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⑤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39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개발계획 및 제42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 제40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 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 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제4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

를 승계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1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40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4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31조 제5항에 따라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은 제31조 제6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3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도지사는 제42조에 따라 실시계 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 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44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 가·결정·해제·지정·승인·협의·심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 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3. 「농지법」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제34 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0 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 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 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9.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의 인가 또는 신고
-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 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 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 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

- 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13.「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 2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27.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

계획의 승인

-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 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 3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3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 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 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결정
- 3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제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 천점용의 허가
- 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
-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

-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4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4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4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 검토
- 4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에 따른 국 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의 승인
- 4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4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전협의
- 48.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 49.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의 협의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

- 의 금지사항 허용을 위한 관할 부대장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 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 5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② 도지사는 제4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45조(개발사업의 착수와 연기) ①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발 사업의 착수기한은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개발사업 착수기한의 연기 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제46조(토지수용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

- 에 있는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4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7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부담한다.

- ② 환동해경제자유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따른다.
-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시·도
-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3. 통신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49(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초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환경보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내·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

- 제50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는 환동해경제 자유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내·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입주기업"이라 한다)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주기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1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도로·용수·철도·통신·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① 국가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지원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4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환동해경제자유특구 투자기업의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국가는 투자기업이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 장, 환동해경제자유특구 투자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국·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 구하고 개발사업시행나 입주기업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 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 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5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 하거나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의료기관의 교원·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제60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 제6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제7조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이하이 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과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시·군의 산업단지의 신설이나사업지구 지역을 위해 토지이용규제의 해제를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가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등과 관련하여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 업종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제61조(관광산업의 육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의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도지사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2조(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①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②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대한 사업 시행을 위해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3조(항만 및 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 자치도의 항만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②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대한 사업 시행을 위해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 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 정·고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 6. 국제협력의 촉진
-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 · 진흥에 필요한 사업
-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수 있다.
- 제65조(의료기관개설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 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 니한다.

-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 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 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6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개발을 시행할 때「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소속으로 국제관광특구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장 벌칙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동해권자유경제구역기본계

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

- 제68조(벌칙)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환동해권자유경제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이 법 시행 전 강원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 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의 등의 선거에 대한 특례) ① 강원특별

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 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 제4조(강원도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의원 및 강원도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 치도의회의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5조(사무와 재산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강원도에 소속된 직원 및 강원도가 관장하는 기관 또는 시설 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직원 및 강원특별자치 도가 관장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강원도지사가 행한 고시·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 및 강원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강원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해온 재산, 기금, 금

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강원도의 조례·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구성되어 조례·규칙에 대한 정비가 있을 때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강원도지사가 위촉·임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종전의 법령 및 조례·규칙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 임기를 유지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새로 위촉·임면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환동해권자유경제구역 제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